

의안번호	2217090
의 퇴 인	곽규택의원
회 답 일	2026. 4. 8.
추계번호	26B105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3조의2(정보 조작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게시판 등에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제1항) 1.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 기준의 국가명 및 우회 접속 여부를 표시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2.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특정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의미한다)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정보가 대량으로 게재되는 등의 비정상적인 이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3. 제2호에 따른 비정상적인 이용 행위에 해당하는 게시글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조치의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기술적 자문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3조의2(정보 조작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조치의무사업자의 이용자 이용·접속 장소 표시 등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한 운영·관리 실태 점검(안 제43조의2 신설)

- 개정안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게시판 등에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 기준의 국가명 및 우회 접속 여부를 표시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특정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정보가 대량으로 게재되는 등의 비정상적인 이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등’을 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치의무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할 경우, 실태 점검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조치의무사업자의 수, 실태점검의 방법, 전문기관의 자문 및 지원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 개정안은 조치의무사업자의 기준, 실태 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이를 예측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실태점검의 방법, 전문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실태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 참고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정보통신서비스 유형별 이용통계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웹사이트¹⁾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90,860개사) 중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사업자는 총 71개사이고, 연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총 281개사로 나타남

※ [참고자료]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연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웹사이트 운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현황’(2025년 정보통신서비스 유형별 이용통계 조사)

1) ‘2025년 정보통신서비스 유형별 이용통계 조사’에서는 2024년말 기준 랭키닷컴(주식회사 미디어채널의 웹서비스명으로 웹사이트 분석 및 평가 서비스 등 제공)에 등록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조사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

※ [참고자료]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연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웹사이트 운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현황’(2025년 정보통신서비스 유형별 이용통계 조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출자료²⁾)

[표 1]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현황(2024년 기준)

구 분	사업자 수
1150만명 이상 1160만명 미만	1
660만명 이상 670만명 미만	1
360만명 이상 370만명 미만	1
260만명 이상 270만명 미만	1
210만명 이상 220만명 미만	1
200만명 이상 210만명 미만	1
19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	1
110만명 이상 120만명 미만	1
70만명 이상 80만명 미만	1
60만명 이상 70만명 미만	1
50만명 이상 60만명 미만	3
4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7
30만명 이상 40만명 미만	5
2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11
10만명 이상 20만명 미만	35
합 계	71

주: 위 사업자 수는 웹사이트를 기준으로 그 운영 사업자를 조사한 것으로, 여러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일 사업자가 중복된 수치임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2025년 정보통신서비스 유형별 이용통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출한 자료임

[표 2] 연매출액 10억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현황(2024년 기준)

구 분	사업자 수
14조원 이상 15조원 미만	1
10조원 이상 11조원 미만	3
7조원 이상 8조원 미만	2
6조원 이상 7조원 미만	2
5조원 이상 6조원 미만	1
4조원 이상 5조원 미만	1
3조원 이상 4조원 미만	3
2조원 이상 3조원 미만	2
1조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2
1조원 이상 1조5000억원 미만	4
9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5
8000억원 이상 9000억원 미만	1
7000억원 이상 8000억원 미만	6
6000억원 이상 7000억원 미만	3
5000억원 이상 6000억원 미만	1
4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3
3000억원 이상 4000억원 미만	7
20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10
10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	14
9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3
800억원 이상 900억원 미만	3
70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10
6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1
500억원 이상 600억원 미만	8
4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7
30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	6
29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1
280억원 이상 290억원 미만	1
260억원 이상 270억원 미만	1
250억원 이상 260억원 미만	1
240억원 이상 250억원 미만	1
230억원 이상 240억원 미만	3

구 분	사업자 수
220억원 이상 230억원 미만	1
200억원 이상 210억원 미만	1
19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2
180억원 이상 190억원 미만	13
170억원 이상 180억원 미만	4
160억원 이상 170억원 미만	3
150억원 이상 160억원 미만	3
14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3
130억원 이상 140억원 미만	5
120억원 이상 130억원 미만	5
11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5
100억원 이상 110억원 미만	8
9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4
80억원 이상 90억원 미만	7
7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5
6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10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8
4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2
3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20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5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30
합 계	281

주: 1) 위 사업자 수는 웹사이트를 기준으로 그 운영 사업자를 조사한 것으로, 여러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일 사업자가 중복된 수치임

2) 매출액은 2024년도를 기준으로 하되, 공개자료가 미존재 시 발표된 최신년도 자료를 반영함